

IBS 연구단장 선정 및 연구단 구성 · 운영 FAQ

1. 연구단장 선정

1-1. 연구단장 신청 시 연령제한이 있나요?

A. 아닙니다. 연령제한은 없으나, 연구단장은 장기간 왕성한 연구 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1-2. 본원 연구단 연구단장의 정년은 어떻게 되나요?

A. 본원 연구단 단장은 영년직연구원(정년 65세)으로 채용되며, 일정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파견자의 경우는 원소속기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1-3. 연구단장 신청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연중 상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4. 모든 신청자가 연구단장 후보자 Pool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신청자의 연구계획이 IBS의 연구영역에 부합하지 않으면, 연구단장 후보자 Pool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구단장 후보자 Pool에서 제외된 신청자에게는 사유를 첨부하여 통지할 예정입니다.

1-5. 연구단장 선정평가는 후보자 Pool에 포함된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나요?

A. 아닙니다. 연구단장 선정평가는 후보자 Pool에서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에 한해 순차적으로 실시됩니다.

1-6. 연구단장 후보자 Pool에 포함되었으나,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청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연구단장 후보자 Pool은 2년간 관리되므로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채 2년이 경과하면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2년 이내에도 연구업적 추가 등의 신청서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

1-7. 연구단장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A.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연구단장 후보자의 과학적 수월성과 연구계획의 우수성입니다.

1-8. 원소속기관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본원의 연구단장으로 임용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본원 연구단장은 이직이 원칙입니다. 단, 원소속기관장의 동의하에 본원으로의 고용휴직, 파견 또는 겸직이 가능하다면 원소속기관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본원 연구단장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연구단장 임용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9. 캠퍼스 연구단의 연구단장으로는 누가 신청 가능한가요?

A. 과학기술특화대학(KAIST, DGIST, UNIST, POSTECH, GIST) 과 대덕연구단지 내 정부출연 연구기관(KAIST연합캠퍼스)의 소속 교수, 연구원 및 임용예정자가 소속 캠퍼스 연구단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캠퍼스 특화 연구분야(2. 지정연구분야 연구단장 선정 참조)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연구자가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최종 연구단장 선정 이전에 해당 캠퍼스 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1-10. 외부 연구단의 연구단장으로는 누가 신청 가능한가요?

A. 모든 국공립·사립대학 교수와 출연(연) 연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학기술특화대학 교수와 대덕연구단지 내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11. 신규연구단 구성 시 연구단 구성 형태 및 연구단 예산 규모는 어떻게 정하나요?

- A. 신규연구단 구성 시 신청자는 계획하는 연구단의 연구주제 및 연구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단 구성 형태를 정하고, 공동연구단장 또는 부연구단장의 수를 고려하여 필요한 연구단 예산 규모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 평가과정에서 연구단선정평가위원회(SEC) 검토를 통해 예산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후 연구단의 연간 예산은 신청 시 제시된 연구단 예산 규모 내에서 연구단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1-12. 연구단의 적정 연구단 예산 규모(①40억 미만, ②40억 이상~60억 미만, ③60억 이상~80억 미만, ④80억 이상)와 초기 Start-up 투자소요액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 A. 연구단의 적정 예산 규모는 초기 Start-up 투자 소요액을 제외한 연구단의 5년 평균 연간 운영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연구단 초기 구성(초기 2년간)시 필요한 대형 시설·장비 비용 등의 Start-up 투자 소요액은 별도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2. 지정 연구분야 연구단장 선정

2-1. 지정 연구분야 신청 기간 중에는 다른 연구분야는 신청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기존의 연구단장 신청도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2-2. 지정 연구분야 연구단장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A. 기존의 연구단장 신청과 동일합니다. 단, 신청서의 지정 연구분야 지원에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2-3. 기존에 연구단장으로 신청한 사람도 지정 연구분야의 연구단장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업데이트 하여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기존에 제출한 신청서는 자동으로 철회됩니다.

2-4. 지정 연구분야 연구단장은 몇 명이나 선정할 예정인가요?

A. 정해진 바가 없으며, 연구분야에 맞는 적합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5. 지정 연구분야 연구단장의 선정평가 방식은 기존 방식과 동일한가요?

A. 네. 연구분야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선정평가 방식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2-6. 지정 연구분야는 나중에 변경될 수 있나요?

A. 네. 지정 연구분야는 필요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번 공고된 연구분야의 경우 공고 후 2년이 지나도록 연구단장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다시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2-7. 이론 물리와 수학 분야 연구단은 반드시 본원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본원에서의 신청이 원칙이며, 본원의 연구단장으로 임용되면 2년 이내 본원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2-8. 지정 연구분야의 세부 연구내용으로 제시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세부 연구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지정 연구분야와 관련된 범위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본원에 두는 이론물리와 수학분야 연구단은 복수의 연구단장(공동 연구단장)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2-9. 캠퍼스 특화 연구분야의 경우 예시된 세부 연구내용만으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캠퍼스별 특화 연구분야와 관련된 다른 연구내용도 가능합니다.

3. 연구단 구성 및 운영

3-1. 연구단장으로 선정되면 어떻게 임용되나요?

A. 연구단장의 임용형태는 연구단 유형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단장 임용형태	
본원 연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BS 영년직 연구원으로 임용 ◦ 본원에서의 이직이 원칙. 다만, 사유가 있는 경우 파견 또는 고용휴직 가능하며 그 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
캠퍼스·외부 연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기관 소속을 유지하되 IBS와 별도 고용계약 체결 (검직) ◦ 다만, 원소속기관에서 유치기관으로 이직하기 힘든 경우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유치기관으로 파견 또는 고용휴직 가능하며 그 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

3-2. 연구단장의 인건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연구단장의 인건비는 연구단장 선정 후 IBS 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3. 연구단의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A. 연구단은 연구단장과 부연구단장, 연구위원, 연구원, 학생 연구원 및 지원인력 등으로 구성되며 연구인력들은 동일 장소에서 연구함이 원칙입니다. 본원 및 캠퍼스 연구단의 경우, 연구인력은 특별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인력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단장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연구단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에게 임용을 요청하면 내부절차에 따라 IBS 원장이 임용합니다. 다만, 부연구단장의 경우는 IBS 내부 절차에 따른 검증을 거쳐 임용합니다.

3-4. 연구단 예산 규모는 연구단 구성 후 변경 가능한가요?

A. 연구단 예산 규모는 연구단 성과평가(최초 설립 이후 5년, 그 다음 부터는 3년단위) 시점에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단선정평가 위원회(SEC)의 승인을 얻어 변경가능하며, 평가 이전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구단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특정 연도의 연구비를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책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5. 부연구단장의 정의와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A. 부연구단장은 연구잠재력이 큰 중견급 연구자로서, 연구단 내에서 연구단장과 협력하면서 자신의 연구그룹을 운영하게 됩니다. 부연구단장에게는 일정규모의 독자적 연구비를 보장하는 등 연구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3-6. 부연구단장의 채용시기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부연구단장 채용은 연구단 수요에 따라 수시로 진행되며 국내외 주요 학회 및 저널을 통해 별도로 공지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지원자들에 대해 외부전문가 및 연구단장의 서면심의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심층평가 후보자를 결정합니다. 추천된 심층평가 후보자는 IBS 내부절차에 따른 자격검증을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추천된 경우에 한해 부연구단장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3-7. 부연구단장의 인건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부연구단장의 인건비는 부연구단장 선정 후 연구단장과의 협의를 거쳐 IBS 원장의 승인 하에 결정됩니다.

3-8. 연구단장과 부연구단장, 연구위원, 연구원은 전임근무가 원칙인가요?

A. 네. 전임근무가 원칙입니다. 다만, 타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연구단장 및 부연구단장으로 이직하는 경우, 원소속기관의 직을 본원인 경우에는 본원으로, 캠퍼스인 경우는 유치기관으로 이직하는 기간으로 최대 2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이 기간 중 고용 휴직, 파견 또는 겸임 근무가 가능하며, 원소속 기관이 해외인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part-time 근무 가능)

3-9. 연구단장과 부연구단장은 강의를 할 수 없나요?

A. 연구단장은 1년에 한 과목 이내의 강의 및 논문지도, 부연구단장은 한 학기에 한 과목 이내의 강의 및 논문지도가 가능합니다.

3-10. 연구단에 참여하면서 다른 과제를 수행할 수는 없나요?

A. 연구단장 및 부연구단장은 IBS 연구에 전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규로 선정된 연구단장과 부연구단장은 기 수행중인 과제를 원장이 정하는 일정한 정리기간 동안 마무리해야 합니다.

3-11. 현재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부)연구단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기초연구사업 수행자가 IBS (부)연구단장으로 선정될 경우, 연구 착수시기는 기 수행 중인 연구사업 (단계) 종료시점으로 조정됩니다.

3-12. 연구단장과 부연구단장은 동일 장소에서 근무해야 합니까?

A. 네. 연구단장, 부연구단장, 연구위원, 연구원 등 연구단 참여 인력은 동일장소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3-13. 연구단의 연구비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A. 본원과 캠퍼스 연구단의 경우 IBS가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며, 외부 연구단의 경우 연구단 유치기관에서 연구비를 관리합니다.

3-14. 연구단에 대한 성과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나요?

A. 연구단 성과평가는 3년 단위로 시행합니다. 신설 연구단의 경우, 연구단 구성 2년 후에 컨설팅 방식의 중간점검(평가가 아닌 점검 개념)을 실시하고, 이후 3년 단위로 성과평가를 시행합니다.

3-15. 연구단은 운영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 연구단은 성과평가를 통해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3-16. 연구단 연구성과로 발생한 논문과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나요?

A. 논문과 지식재산권의 소유 원칙은 아래와 같으며 기관 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연구단 유형별 연구성과 분배원칙>

구분	논문	지식재산권
본원 연구단	IBS*	IBS*
캠퍼스 연구단	IBS 및 유치기관 병행명기	IBS 및 유치기관 공동소유
외부 연구단	IBS 및 유치기관 또는 저자의 원소속기관 병행명기**	IBS 및 유치기관 또는 발명자의 원소속기관 공동소유***

* 대학 또는 출연(연)에서 본원 연구단장으로 파견 온 경우, 논문은 IBS와 원소속기관을 병행 명기하되, 지식재산권은 IBS가 소유

** 연구단 유치기관 외의 기관에서 유치기관으로 파견된 연구원이 저자인 경우, IBS 외의 소속기관 표기는 저자의 원소속기관과 유치기관 간 협의에 따름

*** 연구단 유치기관 외의 기관에서 유치기관으로 파견된 연구원이 발명자인 경우, IBS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발명자의 원소속기관과 유치기관 간 협약에 따름

3-17. 연구단장이 정년, 권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구단은 어떻게 되나요?

A. 성과평가위원회(또는 별도 위원회의 구성) 심의를 통해 연구단의 유지 또는 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연구단의 유지가 결정된 경우 후임 연구단장을 선정하여 연구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이내 후임 연구단장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구단을 폐지하게 됩니다.

연구단의 폐지가 결정된 경우에는 연구단 구성원이 연구를 정리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소된 연구비, 연구공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